KOSHA GUIDE E - 22 - 2012

>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보호시스템 안전성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지침

> > 2012. 6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충북대 안전공학과 김두현 교수

o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

- o 제·개정 경과
  - 2009년 11월 KOSHA CODE 전기분야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2년 4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o 관련규격 및 자료
  - KOSHA GUIDE E-105-2012(가스폭발위험분위기에서의 전기설비 설계,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
  - BS EN15233:2007 Methodology for functional safety assessment of protective systems for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(전기로 인한 위험방지)
- o 기술지침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6월 20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22 - 2012

#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보호시스템 안전성 평가방법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적

이 가이드는 폭발위험장소의 보호시스템을 설계할 때 필요한 기능 안전성 평가절차와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 2. 적용범위

이 가이드는 보호시스템 설계를 위한 기능 안전성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도된 사용, 가능한 장비 및 보호시스템의 신뢰성 등을 다루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 다 만, 점화원에 대한 규명은 포함하지 않으며, 보호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야기되는 위험 은 제외한다.

#### 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고장(Failure)"이란 어느 시스템 항목이나 부품들, 또는 관리기능 업무 등이 공정의 초기 정해진 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능상태를 말한다.
  - (나) "기능안전성(Functional safety)"이란 보호시스템 성능을 나타내는 장치와 관련 된 안전을 포함한 보호시스템의 기능과 보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반적인 안 전성을 말한다.
  - (다) "보호시스템(Protective system)"이란 장비의 구성품 이외의 장치를 말하며, 초 기 폭발을 즉시 멈추게 하거나 폭발의 영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, 구 매시 자동시스템과는 별도의 시스템이다.
  - (라) "기능 안전성판단(Functional safety estimation)"란 보호시스템의 기능 안전성

E - 22 - 2012

에 위배되는 고장의 발생하는 확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.

- (마) "기능 안전성평가(Functional safety evaluation)"이란 미리 정의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보호시스템의 기능 안전성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4. 일반 요구사항

#### 4.1 기본개념

- (1) 기능 안전성평가는 설계자와 안전기술자가 보호시스템 또는 그 부분의 기능을 시스템적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논리적 단계로 평가는 다음 단계에 따른다.
  - (가)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(5.1 참조)
  - (나) 고장의 규명(5.2 참조)
  - (다) 기능 안전성판단(5.4 참조) : 기능과 신뢰도
  - (라) 기능 안전성평가(5.5 참조)
- (2) 만약 요구되는 기능 및 신뢰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, 보호시스템을 개선하 거나 적합한 사용의도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(3) 만약 평가가 제조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면, 그 평가결과는 기술문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.
- (4) 기능 안전성평가의 결정은 정량적 방법에 의해야 하고, 필요하다면 정성적 방법으로 보완하여야 한다.

E - 22 - 2012

4.2 기능 안전성평가의 범위 및 필요정보

#### 4.2.1 기능 안전성평가의 범위

- (1) 보호시스템의 평가는 4.2.2에 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- (2) 보호시스템의 평가는 특정 보호시스템에서 논리상 예측될 수 있는 사용 및 오사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#### 4.2.2 필요한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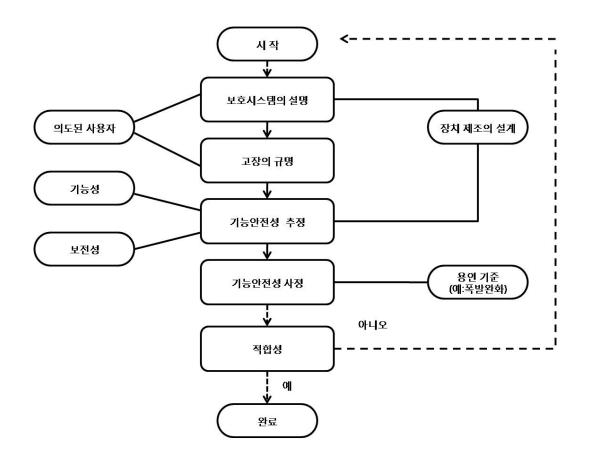
- (1) 기능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의도된 사용
- (나) 보호시스템의 설계에 사용된 안전특성
- (다) 정비를 위한 요구사항
- (라) 실질적이고 예상되는 주위환경 조건
- (라) 관련 설계도
- (마) 설계(계산서) 및 검사결과
- 적용 가능한 경우,
- (바) 시험성적서
- (사) 사고이력
- (아) 관련된 안전 출판물
- (2) 추가적인 예방대책은 문서화 한다.
- (3) 설계가 발전되고 개정될 경우에는 정보는 경신하여야 한다.
- (4) 정성적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, 핸드북, 연구실 또는 제조자의 시방서는 적합성이 확실하면 사용해야 한다. 불명확한 데이터는 문서화 한다.

KOSHA GUIDE E - 22 - 2012

# 5. 기능 안전성평가 절차

## 5.1 원리

- (1) 기능 안전성평가의 주요한 단계는 <그림 1>과 같이 4단계로 나타낸다.
- (2) 정비 요구사항은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.
- (3) 제조자는 모든 필요한 정비 요구사항을 사용설명서에 제시하고, 사용의도에 적합한 정비의 누락에 대하여도 제시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> 보호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능 안전성 평가

(4) 설계할 때 <그림 1>의 단계적 접근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스템의 기능

E - 22 - 2012

과 폭발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.

- (5) 의도된 사용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고려해야 한다.
  - (가) 보호시스템의 수명주기
  - (나) 사용, 시간, 공간의 한계
  - (다) 기능의 정확한 정의
- (라) 제조용 재료의 선정
- (마) 성능, 수명과 구성
- (바) 폭발 유형의 설명
- (사) 공정조건의 한계
- (아) 정비 요구사항

#### 5.2 고장규명

#### 5.2.1 일반사항

- (1) 보호시스템은 잠재적 고장원을 통하여 평가해야 한다. 의도된 사용에 띠른 기능해석과 상태해석에 사용해야 한다.
- (2) 보호시스템은 수동시스템(화염억제기(Flame arrester), 배기 시스템)과 능동시스템(진압 시스템)으로 구분한다.
- (3) 가능한 고장은 기능해석과 시스템해석을 통해 평가하고,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.

#### 5.2.2 평가

- (1)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는 다음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(가) 사용의도의 충족여부

#### E - 22 - 2012

- ① 화염 억제기의 충분한 열전도
- ② 배기 시스템의 효과적인 압력방출
- ③ 진압시스템의 충분한 진압 효율
- (나) 보호시스템의 기계적 치수의 적합성. 고장은 다음의 경우에 발생된다.
  - ① 불충분한 압력 내성
  - ② 불충분한 온도 내성
  - ③ 불충분한 진동과 충격에 대한 내성
  - ④ 불충분한 노화 또는 부식에 대한 내성
- (다) 부적합한 설치 장소, 설치위치 또는 폭발성을 조장하는 설치방법은 피한다.
- (라) 공정을 고려한 적절한 모드, 외부온도, 외부압력 등은 정상운영을 위한 한계나 감도와 마찬가지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(마) 적당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와 제어장치(하드웨어)를 사용할 경우
- (바) 하드웨어의 전자기에 의한 내성
- (사) Fail-safe 장치의 추가
- (아) 정전상태에서도 시스템이 의도된 사용으로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.
- (2) 설치 단계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조자는 다음과 같은 발생 가능한 고장들을 고려해야 한다.
  - (가) 의도된 기능(진공차단기, 압력방출장치 전면의 위험지역, 상해의 위험 등)에 의한 영향의 미흡하거나 불충분한 검토
  - (나) 불충분한 밀봉 또는 그럴듯한 기만행위
  - (다) 불충분한 전기적 조건(단락, 개방, 과부하, 지락사고)
  - (라) 제어 및 지시장치에 대한 불충분한 전원 및 예비전원의 공급
- (3) 보호시스템의 작동 및 정비 중에 발생 가능한 고장들을 고려해야 하고, 제조자는 보호시스템 고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. 사용 및 정비 중에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고장들은 다음과 같다.

#### (가) 오염

E - 22 - 2012

- (나) 사람에 의한 불합리하거나 불충분한 간섭(잘못된 조작, 잘못된 설치, 불합리한 정비, 의도되지 않은 간섭)
- (다) 고장 메시지의 표시와 비상정지 절차의 미흡
- (라)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상황들과 발생 가능한 고장들은 사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.
- (4) 보호시스템 안전에 관련된 수정사항은 안정성평가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.

# 5.4 기능 안전성평가

#### 5.4.1 일반사항

- (1) 고장 확인 후, 보호시스템의 기능 안전성은 고장 발생률을 결정함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.
- (2) 기능 안전성평가는 고장확률, 보호시스템과 안전관련 장치의 복잡성을 감소시킴 에 있어서 시스템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량적으로, 또는 반정성적, 정성적으로 행해져야 한다.
- (3) 보호시스템의 요구 성능은 다음과 같다.
  - (가) 기능, 즉 시스템의 의도된 사용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의 성능(초기 폭발억제, 폭발압력 감소)
  - (나) 보전성,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신뢰성(즉시 또는 알맞은 때)
- (4) 기능에 요구되는 성능은 신뢰성 데이터 혹은 시스템 구조상의 고장방지능력의 표시로 정할 수 있다.
- (5) 신뢰성은 시스템 보호기능의 고장을 유발할 수 있는 각각의 매개변수를 위해 추정하거나 평가되어야 한다.

E - 22 - 2012

# 5.4.2 기능성

- (1) 기능 안전성평가는 고장 발생주기의 관점에서 기술상의 고장과 작동상의 고장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.
- (2) 기능 안전성평가는 안 좋은 상황을 기초로 되어야 한다.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 기능 안전성은 오직 보호시스템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만을 평가해야 한다.
- (3) 고장규명의 유형은 성능감소와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의 평가가 필요하다.
- (4) 다음과 같은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의 위험한 상태는 고려되어 야 한다.
  - (가) 조건 및 작동모드(설치와 작동 요구사항, 정비 요구사항, 실험, 리셋, 연동장치, 바이패스)
  - (나) 요구된 응답 및 반응시간(액츄에이터의 응답시간 센서와 예방조치의 반응시간)
  - (다) 고장기능 및 상태
  - (라) Fail-safe 기능, 안전상태
  - (마) 위험고장과 관련된 작동의 감시와 감지능력
  - (바) 안전성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스템의 민감도
  - (사) 설계 및 제어요소
  - (아) 시스템 구조, 이중안전성, 고장방지능력
  - (자) 시스템 구성요소의 인터페이스, 안전성과 관련된 제어요소, 그리고 안전장치
  - (차) 점검 및 시험방법
  - (카) 적당한 기능을 위한 다른 시스템의 독립성 또는 종속성
  - (타) 시스템적 고장 및 점검과 무관한 고장

#### 5.4.3 보전판단

(1) 기능의 신뢰성에서 안전 보전성 요구사항을 정의해야 하고, 안전성과 관련된 보호시스템 성능장치를 평가해야 한다.

#### E - 22 - 2012

- (2) 단순 예방시스템은 안전시스템과 검증되거나 요구된 기능을 따르는 장치에 의지 해서는 안 되고, 검증 또는 평가를 사용함으로서 검증된 기초로 평가된다.
- (3) 문서화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것 또는 안전성과 관련된 복잡한 시스템과 장치는 신뢰성 계산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.
- (4) 각각의 상황에서 안전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빈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한다.
  - (가) 작동모드(수요모드 및 연속모드)
  - (나) 상정 수요율
  - (다) 건축/건축술의 제약성
  - (라) 시스템적 고장
  - (마) 고장 원인
  - (바) 평균 수리시간(MTTR)
  - (사) 검사/시험 주기
  - (아) 진단범위 및 안전 고장분
- (5) 보전성 평가결과는 고장확률 또는 시간당 고장 위험율의 신뢰성 있는 수치 형태 여야 한다. 고장률은 각각의 다른 기능별, 그리고 전체 보호시스템 기능으로 나 타나는 것이 적합하다.
- (6) 기능 안전성평가와 사용자를 위해 요구되는 이러한 결과는 보호시스템이 어떻게 통합 폭발위험 평가와 전체 폭발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도움이 되 는지 입증해야 한다.

#### 5.5 기능 안전성 평가

- (1) 기능 안전성판단의 수용은 평가되어야 한다.
- (2) 평가확률로서의 수용기준은 정량적, 반정성적 또는 정성적이어야 한다.

E - 22 - 2012

- (3) 제시된 수용기준과 함께 수요가 있을 때 보호시스템이 실패할 결정 확률에 대한 비교를 통해 위험성 감소를 위한 수단이 필요여부를 판단한다.
- (4) 위험성 감소수단을 확인하기 위하여, 보호시스템의 구성요소 또는 전체적인 위험 성을 결정하는 보호시스템의 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. 그리고 안전성의 이득 과 실현 가능성을 재조사하여 분석되어야 한다.

## 6. 문서

#### 6.1 제조자 문서

- (1) 다음의 문서는 보호시스템의 문서의 일부이어야 한다.
- (2) 기능 안전성평가의 문서는 다음의 절차와 성취된 결과에 의하여 한다.
- (가) 평가된 보호 시스템(설명서, 제한, 의도된 사용, 작동 설명)
- (나) 만들어진 관련된 가정(부하, 강도, 안전 요인)
- (다) 4.2.2(1)(가)~(라)에 따르는 사용을 위한 지침
- (라) 기능 안전성 평가를 기초로 한 추가 정보
- (마) 사용된 자료와 근원 참조(데이터베이스, 사고 이력, 유사한 장치에 적용되는 기 능안전성 으로부터의 경험)
- (바) 고장규명
- (사) 기능 안전성판단의 최종 결과
- (아) 확인된 고장제거를 위한 안전수단 또는 기능 안전성의 증대(기준 또는 기타 설명서)
- (자) 최종 기능 안전성 평가의 결과

#### 6.2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

(1) 제조자의 문서는 적당한 시기에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.

E - 22 - 2012

- (2) 평가된 보호시스템(설명서, 제한, 의도된 사용, 작동 설명)
- (3) 기능 안전성평가를 기초로 한 추가 정보
- (4) 확인된 고장제거를 위한 안전수단 또는 기능 안전성의 증대(기준 또는 기타 설명서)
- (5) 최종 기능 안전성 평가의 결과